

『구미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이 각 자치단체별로 지급기준과 지급한도액이 상이함에 따라 통일적 운영으로 형평성을 도모하고
- 포상금 지급심의 위원회를 운영하여 공적심사의 신뢰성을 제고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포상금 지급기준을 년차별로 차등화 함(안 제3조)
 -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100분의 1
 -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100분의 3
 -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100분의 5
-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1건당 30만원 이하, 개인별 월 100만원 이하로 함(안 제4조)
- 체납액 징수 공적심의를 위하여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 함(안 제5조)
-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환수 규정 신설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29조, 제39조
-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90조
- 경상북도 재정과5911(2006.3.29)호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표준안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이 각 자치단체별로 지급기준과 지급한도액이 상이함에 따라 통일적 운영으로 형평성을 도모하고 포상금 지급심의 위원회를 운영하여 공적심사의 신뢰성을 제고코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
- 주요 개정내용은
 - 포상금 지급기준을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는 경우 당초 100분의 5로 지급하던 것을
 -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100분의 1
 -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100분의 3
 - 3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100분의 5로 연차별 차등지급
 -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미수금 징수 1건당 당초 한도액 없던 것을 30만원 이하, 개인별 월 100만원 이하로 함.
 - 포상금 지급시 공적심의를 위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환수규정 등 포상금 지급절차를 규정하였음
-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 개정안에 준하여 개정된 조례안입니다.